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5. 3.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그 부속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부서"란 사업을 총괄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 기획·평가·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를 말한다.
3. "과제"란 사업을 통해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신청기업"이란 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원기업"이란 최종 선정되어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시험인증기관"이란 지원기업이 요청한 해외인증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거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발급 또는 대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시험인증비"란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시험비를 말하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정부지원금"이란 시험인증비 중 전담기관의 장이 시험인증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민간부담금"이란 시험인증비 중 지원기업이 시험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전문가"란 전담기관에 등록되어 컨설팅 및 대행 등을 통해 지원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보조금관리시스템"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인증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험인증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지원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전문가의 과제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사업결과검토 등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과 협약한 과제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인증비의 민간부담금 및 부가세 부담
3. 전담기관과 시험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컨설팅 참여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확보 및 행정지원
5. 수행현황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6. 시험인증비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신청
7.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8. 과제 완료 후 후속성과,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6조(시험인증기관) 시험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과 협약한 과제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사업 결과의 제출
3. 시험인증비 지원을 위한 요청 자료의 제출
4. 지원기업의 수행상황 보고에 대한 협조
5. 과제 완료 후 후속성과,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7조(자문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정부·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내·외부 전문가로서 자문위원장 1인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시급한 사항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한국 전파진흥협회 평가위원 선정·관리 규칙 등' 내부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전문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등록·관리하며,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의 인증획득에 대한 컨설팅 및 대행

2. 1호에 따른 업무 수행 후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전문가로 등록한다.

1. 기업체(기업·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3장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

제10조(사업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 및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20일 이상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되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내용 및 기간, 추진체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
4. 시험인증비 지원규모(민간부담금 부담여부 포함)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사업의 전담기관
8. 기타 과제 신청,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제11조(신청자격) ① 과제의 신청자격은 ICT분야 제품 또는 융복합 제품을 개발·제조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단독으로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신청서류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8. 그 밖에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제12조(과제신청) ① 신청기업은 공모 시 제공되는 과제신청서와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신청기업은 모집공고상의 접수기간 내에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방법을 통해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과제 신청 후,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제8조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 참여기업에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통하여 제11조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시행하며, 필요시 대면평가 또는 비대면 평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제10조제5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과제계획 보완)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평가를 통해 예비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예비 지원기업이 제시한 과제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예비 지원기업이 과제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 원가조사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검토 결과에 대해 예비 지원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비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약체결 이전에 과제계획서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제15조(최종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계획 보완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업을 최종선정한다.
- ② 지원기업의 선정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지원기업 최종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체결

-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협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과제계획서 등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이후 상호,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고 과제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외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과제계획서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과 지원기업은 과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8조(협약 등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기업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에 따른 협약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수행상황 보고 등 지원기관의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원기업이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하며 특별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지원기업 및 대표자 등에 대하여 최대 5년 이하 전담기관의 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은 협약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한도내에서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순위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⑤ 지원기업의 추가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산의 한도내에서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원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 ⑥ 기타 협약 해약에 관한 제재조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5장 시험인증기관 및 전문가 활용

제19조(시험인증기관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시험인증기관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2. KOLAS 시험기관
 3. 국제규격(ISO/IEC 17025, ISO/IEC 17065)을 만족하는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4.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5.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행하는 업력 3년 이상의 기업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②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인증기관으로 등록한다.
- ③ 시험인증기관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과제 시험인증기관 선정) 전담기관은 과제별 2개 이상의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인증비 견적을 비교·검토하여 과제의 최종 시험인증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가 등록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가를 확보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협약기간 내 지원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은 전문가를 배정하여 컨설팅 및 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가 활용수당은 전담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른다.

제6장 과제 수행

제22조(과제의 수행기간) 과제의 수행기간은 「국가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용도 외 사용 금지) 지원기업은 이 지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인증을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시험비 또는 인증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시험인증비 산정 및 정산

제24조(시험인증비의 산정) ① 시험인증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전담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시험인증비는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비 또는 인증비로 구성하며, 전담기관은 2개 이상의 시험인증기관 견적을 비교·검토하여 산정한다.

제25조(시험인증비의 지급) ①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이후, 시험 또는 인증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인증비 및 부가세를 시험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시험 또는 인증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해당 과제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시험인증비 및 부가세 지급을 확인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험인증비 불인정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험인증비 집행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
2. 시험인증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채버사용, 디버깅 및 물품 구매 등 시험비 또는 인증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또는 목적 외 사용)
3. 증빙서류가 없거나 위조(허위 포함)된 경우
4.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폐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시험인증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8장 보고 및 평가

제27조(수행상황 보고) ① 지원기업은 과제의 수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 제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 고려하여 현장점검을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현장점검 : 협약 후 5개월 이내
2. 완료보고 :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때에 지원기업의 장에게 과제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수시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기간 중, 지원기업의 과제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현장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앞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은 현장점검 전 수행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수행현황 보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수행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원기업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다.
- ⑦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4개월 이내 과제가 종료되는 경우
 2. 시험인증비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 ⑧ 현장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0조(완료보고)** ① 지원기업과 전문가는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원기업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다.
 - ④ 완료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1조(최종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완료보고서 등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한다.
 - ③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상황에 대하여 적부를 판정하고 적합한 경우 제25조에 따라 지원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적합한 경우 지원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에 원인과 사유를 확인하여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최종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성과관리 및 활용 등

- 제32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기간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지원기업의 장에게 해외인증 활용 현황, 수출실적 및 후속성과 등 사업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기간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시험인증기관에게 매출 등 사업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원기업의 장과 시험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결과물의 귀속) ①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서 및 인증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이 성과활용 기간 내에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4조 관련)

시험인증비 편성기준

(1)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의 형태에 따른 정부지원금 편성기준에 따라 시험인증비* 구성

* 시험인증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VAT별도

(2) 정부지원금 : 총 시험인증비의 70% 이내

(3) 민간부담금 : 총 시험인증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

※ 예시) 시험인증비가 100만원(VAT별도) 인 경우

시험인증비		부가세
정부지원금 (잔금)	민간부담금 (선금)	
70만원 (시험인증비(100만원)의 70%)	30만원 (시험인증비(100만원)의 30%)	10만원 (시험인증비(100만원)의 10%)

(4) 부가세 : 부가세는 신청기업이 민간부담금과 구분하여 시험인증기관에 납부